

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12. 6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1월 21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4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5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12. 6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○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치위원
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
(안 제17조의3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○김성배 위원의 심사보류안 동의

6. 審査保留案의 要 旨

○현재 2년까지 가능한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짧아 축적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, 임기를 연장할 경우 위원장 직을 장기간 유지함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장·단점이 상존하므로,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함

7. 審 査 結 果 : 심사보류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로 가결함)